

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2021. 6.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89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5. 28.
- 라. 회부일자 : 2021. 5. 28.

## 2.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음악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 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제정이유

본 제정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되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이 기존 대통령령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음악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음.

###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근거규정 명기 및 신규 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연 3시간)
- 교육계획 수립, 교육교재 제작 배부, 교육방법, 교육강사, 교육통지 규정 명기

#### 3) 교육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교육이수자 관리 : 교육이수자 명부 작성 비치 및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
- 교육불참자 조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 다. 검토결과

###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이하 “법”이라고 한다.)가 개정되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이 기존 대통령령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됨.

### 2) 신규 등록자 및 교육 불참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노력 필요

- 노래연습장은 업종의 특성 상 사업자 및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신규 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조례 제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 1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1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제16조(권한의 위탁)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1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붙임 2****「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

(2021. 5. 20. 기준)

지역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68개)
서울특별시 (3)	강서구, 마포구, 성동구
부산광역시 (4)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기장군
인천광역시 (4)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중구
대구광역시 (8)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대전광역시 (4)	대덕구, 서구, 유성구, 중구
광주광역시 (4)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울산광역시 (4)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 (14)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충청남도 (2)	서산시, 아산시
충청북도 (3)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강원도 (3)	양양군, 평창군, 화천군
전라남도 (6)	목포시, 순천시, 강진군, 고흥군, 영광군, 완도군
전라북도 (2)	전주시, 무주군
경상남도 (6)	김해시, 진주시, 거창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경상북도 (1)	경산시